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0 선고 2020가단27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홍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성복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7.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8. 10. 5. 체결된 55,000,000원 및 2018. 10. 10. 체결된 10,000,000원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43,991,18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991,1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2016가단6600호 사건에서 2016.

9. 9. “C은 원고에게 26,074,67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6. 10. 7.까지

6,000,000원, 2016. 10. 31.까지 7,000,000원, 2016. 11. 30.까지 13,074,670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C이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하는 경우에는 C은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C은 원고에게 미지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C은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1회 분할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1회 분할금 지급기일인

2016. 10. 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C은 2018. 8. 21.경 자신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D아파트’라고

한다)를 F에게 매매대금 283,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10. 10.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F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2018. 10. 5. 55,000,000원, 2018. 10.

10.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C은 위 송금

당시에 이 사건 D아파트를 매도하여 받은 매매대금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G은행에 대하여

182,085,868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피고는 2018. 8. 20. H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J호를 매매대금 187,000,000원에

매수하고, 2018. 10. 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10. 5. C으로부터

55,00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9,264,029원을 H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 권선구청장, K조합 고색지점, G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는 C에 대하여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D아파트를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송금하여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결과 상대방이 그 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상환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의하여 피고에게 교부된 돈은 이미 소비되어 현재 반환할 수 있는 원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일인 2021. 5. 6.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원고의 채권액은 다음과 같이 43,991,182원이 된다.

○ 원금 : 26,074,670원

○ 이자(지연손해금) : 17,916,512원

$26,074,670\text{원} \times 1672\text{일}(2016. 10. 8.\text{부터 } 2021. 5. 6.\text{까지}) \times 0.15 \div 365 = 17,916,512\text{원}$

○ 합계 43,991,182원(= 26,074,670원 + 17,916,512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43,991,18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3,991,1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권성우